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3
----------	------

발의년월일 : 2017년 12월 18일

발 의 자 : 문영민 의원(1명)

찬 성 자 : 송재형, 이순자, 유광상, 김인호,
황준환, 김상훈, 김용석(도봉),
최관술, 김희걸 의원(9명)

1.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함(안 제6조)

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u>행정자치부</u>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 ----- ----- <u>행정안전부</u>----- ----- . ----- ----- .</p>
<p>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② (생략) ③ 시장은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u>행정자치부장관</u>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 가운데 2명은 행정1부시장 및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3명과</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p>

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3. (생략)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⑤ (생략)

-----.

1. 서울특별시의회-----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번만 -----

-.

⑤ (현행과 같음)